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소라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이에 작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의 치료 및 간호·간병에 드는 비용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비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